

『3D영상제작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영화진흥위원회간의 양해각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상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한국의 영상산업 진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3D영상제작 핵심인재 양성을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진흥원과 위원회가 한국의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3D영상제작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협약의 내용) 진흥원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협력한다.

1. 진흥원은 기술 인력 중심의 교육, 위원회는 영화 연출 중심 교육 운영을 통해 교육 운영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한다.
- 위원회의 S3D제작기술교육은 진흥원의 3D전문인력사업으로 운영한다.
2. S3D 콘텐츠 제작 노하우 공유 및 전문 강사 상호 지원
3. S3D 제작 관련 교재 활용 및 제작 시설 활용
4. 양사간 S3D 제작 전문 분야 제작 교육 연계를 통한 현장 실무형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Project Base Learning) 를 모델 개발

제3조 (유효기간)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 당사자 중 일방이 협약해지를 요청하지 않는 한 유지된다.

제4조 (권리·의무의 승계) 본 협약 체결 후 기관의 명칭, 대표자 변경 등 중요 변동사항이 발생하여도 본 협약에 따른 권리·의무는 포괄 승계된다.

제5조 (양도금지) 본 협약과 관련한 모든 자료와 정보는 협약 당사자간의 서면합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기타) 본 협약의 각 조항 해석에 관하여 상호간의 이의가 있거나 본 협약상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한 합의에 따른다.

진흥원과 위원회는 본 협약을 체결한 후 이를 2부 작성하여 각각 기명날인한 각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

2012년 02월 24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원장 정동

위원장 김

代. 권 원

김영수